

프레온(플루오로클로로탄화수소) 소비량 관리 방법 개정 초안 총 설명

프레온 소비량 관리 방법(이하 본 방법으로 약칭)은 2003년 1월 15일에 발표되어 시행되었으며,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 개정은 2019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그 부속 결의의 최신 규제 및 규범을 접목하고, 대만이 2020년 1월 1일부터 내세운 프레온 소비량을 0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관리 대상이었던 프레온 포함 제품 또는 설비를 명확히 규범 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소비량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규정한 면제 용도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한다. 배정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해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프레온이나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설비를 수입한 경우 경매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대만의 프레온 관리 효과를 제고하고자 본 방법을 개정하고 명칭도 『프레온 관리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개정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프레온 및 소비량의 정의를 수정하였다.(개정 조문 제2조)
2. 프레온 소비량 및 생산량의 기준량에 맞춰 일부 규제 일정과 프레온 규제 용도의 일정 도래하여 수정하였다.(개정 조문 제3조, 제4조, 제6조)
3. 배정의 실무적 필요에 따라 현행 배정 제도를 간소화하여 연 1회로 조정하였다.(개정 조문 제9조)
4. 『몬트리올 의정서』 결의에 따라 소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면제 용도의 신청 업무 절차를 신설하였다.(개정 조문 제10조)
5. 면제 용도로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수입 및 신고 규범을 신설하였다.(개정 조문 제11조 및 제14조)
6. 현행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해 허가 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관리 규정을 명확히 규범 하였다.(개정 조문 제19조)
7.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프레온 및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이나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매각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개정 조문 제20조)

프레온 소비량 관리 방법 개정 초안 조문 대비표

개정 명칭	현행 명칭	설명
프레온 관리 방법	프레온 소비량 관리 방법	본 관리 방법 프레온 화학 물질에 대한 관련 규제 및 관리 사항을 규범 하며, 소비량 외에도 용도 규제, 회수·재사용 등 사용 규정을 포함하여 법규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수정 조문	현행 조문	설명
제1조 본 방법은 대기오염방지법(이하 본법으로 약칭)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1조 본 방법은 대기오염방지법(이하 본법으로 약칭)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본 조문은 수정되지 않았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레온: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 대상 화학물질 부록C 제1류 물질로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것이며, 원생, 회생 또는 재생 형태의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다. 2. 프레온 함유 제품 또는 설비: 이전 항의 프레온을 포함하는 상품, 부품 및 해당 부품이 포함된 시스템을 가리킨다. 3. 생산량: <u>프레온의</u> 국내 제조량에서 제조 공정 중 회수 또는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양을 빼고 다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인정한 기술로 폐기한 양을 뺀 순수 값을 가리킨다. 단,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생산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소비량: <u>프레온의</u>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순수 값을 말한다. 단, 몬트리올 의정서 결의로 통과	제2조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레온: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 대상 화학물질 부록C 제1류 물질로 제1류 물질로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것이며, 원생, 회생 또는 재생 형태의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다. 단, 제품(운송과 저장 기능이 있는 용기 제외)에 존재하는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생산량: 국내 제조량에서 제조 공정 중 회수 또는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된 양을 빼고 다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인정한 기술로 폐기한 양을 뺀 순수 값을 가리킨다. 단,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생산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소비량: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순수 값을 가리킨다. 4. 오존층 파괴 잠재력 톤 (Ozone Depleting	1. 프레온은 원생, 회수 또는 재생 형태의 화합물이나 혼합물 등 각 형태의 화학물질을 가리키며, 대만은 프레온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프레온을 포함한 제품 또는 설비를 동시에 규제한다.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해 프레온을 포함한 제품 또는 설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2. 제2호가 제3호로 이동하였으며, 생산량 규범 대상을 프레온으로 수정해 명확히 하였다. 3. 제3호가 제4호로 이동하였으며 소비량의 규제 대상을 프레온으로 수정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체약자 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신설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결의에 따라 면제된 용도 수량(예: 원료 용도, 회수 재사용, 폐기 등)을 소비량 계산에서 제외하여 명확히 하였다.

<p>된 면제용도 수량은 포함하지 않는다.</p> <p>5. 오존층 파괴 잠재력 톤 (Ozone Depleting Potential Tonnes, 이하 ODP톤으로 약칭): 규제 화학물질의 오존층 파괴 잠재력과 그 중량톤을 곱한 값이다.</p> <p>6. 사용업체: 프레온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가리킨다.</p> <p>7. 공급업체: 직접 수입, 제조하여 프레온을 사용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를 가리킨다.</p> <p>8. 실적 이행: 사용업체의 사용량 또는 공급업체의 수입 승인, 판매, 제조 실적, 재고량으로, 증빙자료가 있으며 중앙주관기관에서 확인받은 것을 가리킨다.</p> <p>9. 회수: 기기, 설비 또는 포장 용기로 프레온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p> <p>10. 재사용: 회수한 프레온을 여과, 건조 등 기초 정화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p>	<p>Potential Tonnes, 이하 ODP톤으로 약칭): 규제 화학물질의 오존층 파괴 잠재력과 그 중량톤을 곱한 값이다.</p> <p>5. 사용업체: 프레온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가리킨다.</p> <p>6. 공급업체: 직접 수입, 제조하여 프레온을 사용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를 가리킨다.</p> <p>7. 실적 이행: 사용업체의 사용량 또는 공급업체의 수입 승인, 제조 실적으로, 증빙자료가 있으며 중앙주관기관에서 확인받은 것을 가리킨다.</p> <p>8. 회수: 기기, 설비 또는 포장 용기로 프레온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p> <p>9. 재사용: 회수한 프레온을 여과, 건조 등 기초 정화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p>	<p>4. 제7호가 제8호로 이동하였으며, 실무상 할당량 확인의 필요에 따라 공급업체의 판매량, 공급업체와 사용업체의 재고량을 실적 이행 계산에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명확히 하였다.</p> <p>5. 제4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가 제5호부터 제7호, 제9호, 제10호로 이동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3조 프레온 소비량의 기준량은 638.156 ODP톤이다. 프레온 소비량에 대한 규제 일정 및 연간 상한치는 다음과 같다:</p> <p>1. 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은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3.191 ODP톤으로 사용</p>	<p>제3조 프레온 소비량의 기준량은 638.156 ODP톤이다. 프레온 소비량에 대한 규제 일정 및 연간 상한치는 다음과 같다:</p> <p>1. 중화민국 93년(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의 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414.801 ODP톤이다.</p>	<p>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규제 일정이 이미 도래하여 삭제하고 이후 조목은 차례로 이동한다.</p>

<p>중인 냉동·공조 설비 유지보수로 한정된다.</p> <p>2. 중화민국 119년(203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 소비량은 0이다.</p>	<p>2. 중화민국 99년(서기 2010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159.539 ODP톤이다.</p> <p>3. 중화민국 104년(서기 2015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63.816 ODP톤이다.</p> <p>4. 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은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3.191 ODP톤으로 사용 중인 냉동·공조 설비 유지보수로 한정된다.</p> <p>5. 중화민국 119년(203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 소비량은 0이다.</p>	
<p>제4조 프레온 생산량의 기준량은 638.156 ODP톤이다.</p> <p>프레온 생산량의 규제 일정 및 연간 상한치는 다음과 같다:</p> <p>1. 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은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3.191 ODP톤으로 사용 중인 냉동·공조 설비 유지보수로 한정된다.</p> <p>2. 중화민국 119년(203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 소비량은 0이다.</p> <p>프레온을 제조하는 공급업체는 매년 1월과 7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해당 연도 상·하반기 생산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생산 계획에는 제조량, 기타 화학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용량 및 수출량이 포함된다.</p>	<p>제4조 프레온 생산량의 기준량은 638.156 ODP톤이다.</p> <p>프레온 생산량의 규제 일정 및 연간 상한치는 다음과 같다:</p> <p>1. 중화민국 93년(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이전 항의 기준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2. 중화민국 99년(2010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의 25%, 즉 159.539 ODP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3. 중화민국 104년(2015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의 10%, 즉 63.816 ODP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4. 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기준량은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3.191 ODP톤으로 사용 중인 냉동·공조 설비 유지보수로 한정된다.</p>	<p>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규제 일정이 이미 도래하여 삭제하고 이후 조목은 차례로 이동한다.</p>

	<p>5. 중화민국 119년(203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 소비량은 0이다.</p> <p>프레온을 제조하는 공급업체는 매년 1월과 7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해당 연도 상·하반기 생산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생산 계획에는 제조량, 기타 화학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용량 및 수출량이 포함된다.</p>	
<p>제5조 프레온은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다.</p> <p>프레온의 수출·수입은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정된다.</p>	<p>제5조 프레온은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다.</p> <p>프레온의 수출·수입은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정된다.</p>	<p>본 조문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6조 프레온 규제 용도 및 규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p> <p>1. 중화민국 105년(2016년) 1월 1일부터 프레온을 <u>발포제 용도로</u>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2. 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u>염화불화탄소를 용제(생산 및 세척 공정 포함)</u>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3. 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u>신규 생산 설비 및 신설 공정에서 냉매 충전 등에</u> 프레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4. 중화민국 99년(201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을 분무 추진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중앙주관기관은 이전 항의 사용 금지 규제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규제 용도의 사용업체에</p>	<p>제6조 프레온 규제 용도 및 규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p> <p>1. <u>프레온이 발포제 용도인 경우:</u> (1)중화민국 100년(2011년) 1월 1일부터 1-플루오로-1,1-디클로로에테인(HCFC-141b)을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약칭 PU)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중화민국 104년(2015년) 1월 1일부터 <u>프레온의 할당을 중단</u> 하고, 중화민국 105년(2016년) 1월 1일부터 <u>프레온의 사용을</u> 금지한다.</p> <p>2. <u>프레온이 용제(생산 및 세척 공정 포함) 용도인 경우:</u> (1)중화민국 100년(2011년) 1월 1일부터 1-플루오로-1,1-디클로로에테인(HCFC-141b)을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약칭 PU)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1.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제 일정이 이미 도래하여 문자를 수정하였다.</p> <p>2. 제1항 수정에 맞추어 제2항의 문자도 수정하였다.</p>

<p>게 할당량 발급을 중단한다.</p>	<p>(2)중화민국 109년(202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의 사용을 금지한다.</p> <p>3. 프레온이 냉매 용도인 경우: (1)중화민국 100년(2011년) 1월 1일부터, 7.1kW 이하의 창문형 (분리형 포함) 에어컨 신제품에 디플루오로클로로메탄 (HCFC-22)을 냉매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p> <p>(2)중화민국 104년(2015년) 1월 1일부터 냉동·냉장, 에어컨 신제품 및 신축 공정에 디플루오로클로로메탄(HCFC-22) 냉매 할당을 중단한다. 중화민국 105년(2016년) 1월 1일부터 디플루오로클로로메탄(HCFC-22)을 냉동·냉장, 에어컨 신제품 및 신축 공정의 냉매 충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3)중화민국 109년(201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을 냉동·냉장, 에어컨 신제품 및 신축 공정의 냉매로 사용해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p> <p>4. 중화민국 99년(201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을 분무 추진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p> <p>이전 항 제1호 제2목, 제3호 제2목의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주 관기관은 이전 항의 사용 금지 일정에 따라 규제 용도의 사용 업체에 할당량 배정을 중단해야 한다.</p>	
<p>제7조 중화민국 103년(2014년) 10월 23일부터 새로 추가된 프레온 사용업체와 공급업체는 7월 말까지 아래 서류를 구비해</p>	<p>제8조 중화민국 103년(2014년) 10월 23일부터 새로 추가된 프레온 사용업체와 공급업체는 7월 말까지 아래 서류를 구비해</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중앙주관기관에 할당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업체는 수입업체 자격 문건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2. 공장등록증, 냉동공조업자는 냉동공조업 등록증 사본 및 냉동공조공정 공업동업협회 회원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인이 수입업체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실행 실적 또는 기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4.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서류. <p>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이 통지한 기간 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반려된다.</p> <p>할당 자격을 취득한 업체의 회사 또는 공장 명칭, 주소,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문서를 첨부해 중앙주관기관에 제출하면 할당 자격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p> <p>2년 연속 실행 실적이 0인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에서 그 할당 자격을 취소하며, 자격이 취소된 업체가 다시 신청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중앙주관기관에 할당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업체는 수입업체 자격 문건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6. 공장등록증, 냉동공조업자는 냉동공조업 등록증 사본 및 냉동공조공정 공업동업협회 회원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인이 수입업체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실행 실적 또는 기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8.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서류. <p>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이 통지한 기간 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반려된다.</p> <p>할당 자격을 취득한 업체의 회사 또는 공장 명칭, 주소,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문서를 첨부해 중앙주관기관에 제출하면 할당 자격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p> <p>2년 연속 실행 실적이 0인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에서 그 할당 자격을 취소하며, 자격이 취소된 업체가 다시 신청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제8조 중앙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프레온 소비량 상한의 10%를 국가 건설, 국방 군사 및 긴급 조치등의 필요에 제공하도록</p>	<p>제9조 중앙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프레온 소비량 상한의 10%를 국가 건설, 국방 군사 및 긴급 조치등의 필요에 제공하도록</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보유할 수 있다.</p> <p>이전 항에서 보유한 후 당해 연도 소비량은 해당 연도 할당 총량으로 간주하며, 할당 자격을 갖춘 사용업체에 우선 할당하고 남은 수량은 수입 실적 비율에 따라 할당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에 할당한다.</p> <p>새로 할당 자격을 신청한 업체는 당해 연도 국가 프레온 소비량 할당 후 남은 양을 할당받는다.</p>	<p>보유할 수 있다.</p> <p>이전 항에서 보유한 후 당해 연도 소비량은 해당 연도 할당 총량으로 간주하며, 할당 자격을 갖춘 사용업체에 우선 할당하고 남은 수량은 수입 실적 비율에 따라 할당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에 할당한다.</p> <p>새로 할당 자격을 신청한 업체는 당해 연도 국가 프레온 소비량 할당 후 남은 양을 할당받는다.</p>	
<p>제9조 중앙주관기관은 매년 10월 말까지 배정받은 업체의 다음 연도 프레온의 연간 할당량을 확정해야 한다. 이전 항의 연간 할당량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기존 할당 자격을 가진 업체: <u>전년도 하반기와 당해 연도 상반기의 실행 실적의 합계</u>이며, 해당 업체의 중화민국 113년(2024년) 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다.</p> <p>2. 할당 자격을 신청한 신규 업체: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실행 실적의 2배이다. 추가 할당량은 전년도의 연간 확인가능한 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앙주관기관이 당해 연도 국가 소비량 할당 후 남은 양을 고려해 비율로 할당한다.</p>	<p>제10조 중앙주관기관은 매년 10월 말까지 배정받은 업체의 다음 연도의 프레온의 연간 <u>초기 산정 할당량 및 상반기 할당량</u>을 확정해야 한다.</p> <p>1. 할당 자격을 가진 업체: 해당 연도 상반기 실행 실적 및 <u>하반기 할당량</u>의 합계이다.</p> <p>2. 할당 자격을 신청한 신규 업체: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실행 실적의 2배이다.</p> <p>제11조 제3항 추가 할당량은 전년도 연간 확인가능한 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앙주관기관이 당해 연도 국가 소비량 할당 후 남은 양을 고려해 비율로 할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다. 2. 할당 업무의 실무 필요에 따라 할당 업무를 간소화하여 할당 제도를 연 1회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1항을 수정하였다. 3. 제2항 제1호의 할당량 계산 기준을 수정하여 전년도 하반기 실행 실적에 당해 연도 상반기 실행 실적을 합한 것을 계산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프레온 소비량과 할당량이 2030년 0으로 감축된 것임을 고려해 2023년 할당량을 상한 값으로 명확히 하였다. 4. 제3항은 현행 제11조 제3항을 옮긴 것이다.
	<p>제11조 중앙주관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 할당업체의 당해 연도 프레온 연간 실제 할당량, 추가 할당량 및 하반기 할당량을 확정해야 한다.</p> <p>이전 항의 연간 실제 할당량 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조를 삭제하였다. 2. 제10조 개정에 따라 현행 상·하반기 할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삭제하였다. 3. 제3항이 개정 조문 제9조 제3항으로 이동하였다.

	<p>산 기준은 할당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실행 실적으로 한다. 추가 할당량은 전년도 연간 확인가능한 회수량 계산 기준으로 하며, 중앙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국가 소비량 할당 후 남은 양을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p>	
<p>제10조 이전 조항의 규정 외에 몬트리올 의정서 결의에 따라 면제 용도로 수입된 프레온에 대해서 공급업체 또는 사용업체는 매년 1월, 7월 말까지 아래의 내용 및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주관기관에 면제 용도 수입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정부기관이 승인한 설립 등록 증명서 3. 프레온 용도 설명 4. 프레온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설명 5. 수요량 설명 및 증거 자료 6.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서류 <p>중앙주관기관은 매년 4월, 7월 말까지 이전 항 신청업체의 면제 용도 수입 승인량을 확정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조항은 새로 추가되었다. 2. 제2조 제4호에 추가된 몬트리올 의정서 결의에 따라 면제 용도로 통과된 프레온은 소비량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제9조 배정 제도를 제외한 면제 용도 수입에 대한 심사 신청 절차 및 승인 일정을 명확히 하였다.
<p>제11조 할당량을 보유하거나 이전 조항 면제 용도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이 발급한 프레온 배정 허가증 또는 면제 용도 수입 허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직접 또는 위탁 수입업체를 통해 중앙주관기관에 수입 허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물품은 당기 수입으로 제한된다.</p>	<p>제12조 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이 발급한 프레온 배정 허가증 또는 면제 용도 수입 허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직접 또는 위탁 수입업체를 통해 중앙주관기관에 수입 허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물품은 당기 수입으로 제한된다. 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에서 발급한 프레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제10조에 새로 추가된 면제 용도 수입 허가 규정에 맞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p>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에서 발급한 프레온 배정 허가 서류를 소지해야 직접 또는 위탁 제조업체에 생산할 수 없으며, 당기 인도 생산 물품으로 제한된다.</p> <p>이전 두 항목의 제품이 당기에 수입 배정하거나 국내 구매로 인도되지 않고, 당기 종료 전에 중앙주관기관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당기 할당량 또는 면제 용도 수입 할당량을 중앙주관기관에서 회수한다.</p>	<p>배정 허가 서류를 소지해야 직접 또는 위탁 제조업체에 생산할 수 없으며, 당기 인도 생산 물품으로 제한된다.</p> <p>이전 두 항목의 제품이 당기에 수입 배정하거나 국내 구매로 인도되지 않고, 당기 종료 전에 중앙주관기관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당기 할당량을 중앙주관기관에서 회수한다.</p>	
<p>제12조 사용업체는 보유한 할당량을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에서 그 배정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보유한 할당량을 상호 양도할 수 있다. 승인 없이 양도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에서 해당 공급업체의 연간 실제 할당량에서 양도량의 두 배를 차감하거나 그 배정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3조 사용업체는 보유한 할당량을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에서 그 배정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보유한 할당량을 상호 양도할 수 있다. 승인 없이 양도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에서 해당 공급업체의 연간 실제 할당량에서 양도량의 두 배를 차감하거나 그 배정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13조 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제14조 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15조 (삭제)</p>	<p>본 조항은 삭제하였다.</p>
<p>제14조 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직전 분기에 구매한 프레온의 품명, 수량, 사용량, 용도 설명, 재고량 및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p>	<p>제15조 할당량을 보유한 업체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직전 분기에 구매한 프레온의 품명, 수량, 사용량, 용도 설명, 재고량 및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p>	<p>1.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다. 2. 제10조에서 면제 용도 수입 허가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제4항을 새로 추가하여 업체가 매년 1월과 7월에 면제 용도 수입 허가량의 사용 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p>

<p>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할당량을 보유한 공급업체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직전 분기 수입 또는 제조한 프레온의 품명, 수량, 판매량, 재고량 및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육하는 자료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p>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분기 실행 실적은 0으로 간주한다.</p> <p>제10조 규정에 따라 면제 용도 수입을 승인받은 업체는 매년 1월과 7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직전 반년 간 수입 또는 사용한 프레온의 품명, 수량, 제품 또는 프레온 판매량, 구매량, 재고량, 누적량 및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p>신고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부적합한 경우,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이 통보한 기한 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간주한다.</p>	<p>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할당량을 보유한 공급업체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중앙주관기관에 직전 분기 수입 또는 제조한 프레온의 품명, 수량, 판매량, 재고량 및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육하는 자료를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p>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분기 실행 실적은 0으로 간주한다.</p> <p>신고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부적합한 경우, 업체는 중앙주관기관이 통보한 기한 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간주한다.</p>	<p>다.</p>
<p>제15조 공급업체는 이전의 제2항 따라 분기별 프레온 실행 실적 외에 중앙주관기관에 그 유통업체 명단, 기초 자료, 판매 대상의 용도 및 해당하는 판매 품명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p> <p>공급업체 및 이전 조항의 제2항에 따른 분기별 프레온 실행 실적 신고 외에 중앙주관기관에 그 유통업체 명단, 기초 자료, 판매 대상의 용도 설명 및 해당하는 판매 품명과 수량을 신고</p>	<p>제17조 공급업체는 이전의 제2항 따라 분기별 프레온 실행 실적 외에 중앙주관기관에 그 유통업체 명단, 기초 자료, 판매 대상의 용도 및 해당하는 판매 품명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p> <p>공급업체 및 이전 조항의 제2항에 따른 분기별 프레온 실행 실적 신고 외에 중앙주관기관에 그 유통업체 명단, 기초 자료, 판매 대상의 용도 설명 및 해당하는 판매 품명과 수량을 신고</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해야 한다.</p> <p>공급업체 및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유통업체가 프레온 판매에 종사할 수 있다.</p>	<p>해야 한다.</p> <p>공급업체 및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유통업체가 프레온 판매에 종사할 수 있다.</p>	
<p>제16조 중앙주관기관은 배정 자격 신청 및 실행 실적 신고 사항을 접수한 경우 서류의 완전성과 내용을 심사해 접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p> <p>중앙주관기관은 관련 정부 기관 대표 및 전문가·학자를 초빙해 심사할 수 있다.</p>	<p>제18조 중앙주관기관은 배정 자격 신청 및 실행 실적 신고 사항을 접수한 경우 서류의 완전성과 내용을 심사해 접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p> <p>중앙주관기관은 관련 정부 기관 대표 및 전문가·학자를 초빙해 심사할 수 있다.</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17조 프레온을 냉매 용도로 사용해 충전, 분배, 교체 작업을 할 때는 회수 장비 또는 재사용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p> <p>단, 현장 회수 작업 공간에 회수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p> <p>이전 항 회수 설비와 재사용 설비는 다음의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 설비는 냉매 추출 후 설비 또는 시스템 압력을 102mmHg(밀리미터 수은주)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재사용 설비는 회수 설비 기능을 겸비해 냉매에 포함된 수분, 윤활유 및 공기 등의 불순물이 각각 20ppm(백만분의 일 중량비), 0.01%(부피 백분율) 및 1.5%(부피 백분율) 미만의 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p>제19조 (삭제)</p> <p>제20조 프레온을 냉매 용도로 사용해 충전, 분배, 교체 작업을 할 때는 회수 장비 또는 재사용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p> <p>단, 현장 회수 작업 공간에 회수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p> <p>이전 항 회수 설비와 재사용 설비는 다음의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회수 설비는 냉매 추출 후 설비 또는 시스템 압력을 102mmHg(밀리미터 수은주)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재사용 설비는 회수 설비 기능을 겸비해 냉매에 포함된 수분, 윤활유 및 공기 등의 불순물이 각각 20ppm(백만분의 일 중량비), 0.01%(부피 백분율) 및 1.5%(부피 백분율) 미만의 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p>본 조항은 삭제하였다.</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18조 회수 설비 또는 재사용 설비 사용 시 다음의 조치를 취</p>	<p>제21조 회수 설비 또는 재사용 설비 사용 시 다음의 조치를 취</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 충전 전에 설비 또는 시스템 누출 검사를 진행하고 누출이 발견되면 우선 수리해야 한다. 2. 회수 용기에는 장치의 냉매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3. 회수 또는 재사용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해야 한다. <p>이전 항의 작업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고 보관해야 한다.</p>	<p>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냉매 충전 전에 설비 또는 시스템 누출 검사를 진행하고 누출이 발견되면 우선 수리해야 한다. 5. 회수 용기에는 장치의 냉매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6. 회수 또는 재사용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해야 한다. <p>이전 항의 작업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고 보관해야 한다.</p>	
<p>제19조 <u>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는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다.</u> <u>프레온 제품 또는 설비의 수출, 수입은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정된다.</u></p>	<p>제7조 <u>이전 조항에서 규정한 관리 용도에 대한 배정 중단 시점부터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이전 조에서 관리되는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를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다.</u> <u>이전 항의 수입 인정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항의 번호가 변경되었다. 2. 현행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가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규범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6조 프레온 관리 용도에 대한 배정이 중단되고 사용이 금지되면서 제1항을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3. 현행 실제 화물 운송 방식이 해상운송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제2항을 삭제하였다. 4. 제2항을 추가하여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의 수출입 국가 또는 지역을 제5조 제2항 프레온의 규정과 동일하게 하였다.
<p>제20조 <u>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프레온,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를 수입하였을 때 아직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세 법규에서 규정한 기한 내 반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u> <u>이전 항에서 수입 규정을 위반한 프레온,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의 화물이 압수된</u></p>	<p>제22조 <u>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프레온을 수입하였을 때 관세 법규에서 규정한 기한 내 반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u> 제23조 <u>압수된 프레온에 대해서 중앙주관기관은 지정 또는 위탁한 전담 기관에 프레온의 회수, 재정제, 재사용 임시 보관 및 폐기를 진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프레온 관리 방법 제17조</u> 규정을 참고하여 제1항은 현행 조문 제22조에서 이동해 수정하였고, 제2항은 현행 조문 제23조에서 이동해 수정하였다. 2. 관세법에서 규정한 반송은 통관 이전의 절차이므로, 제1항을 수정하였고 프레온이 포함된 제품 또는 설비를 추

<p>경우 회수, 재정제, 재사용, 임시 보관, 매각, 폐기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p> <p>이전 항의 화물 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반한 수입 행위자가 부담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p>		<p>가하였다.</p> <p>3. 제2항에서 처리 방식을 수정하고 매각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추가해 내용을 수정하였다.</p> <p>4. 제3항을 추가해 위법 행위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p>
<p>제21조 제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중앙주관기관에서 그 할당량을 차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배정 자격을 취소하고 1년 동안 배정 자격의 신청을 중단한다.</p>	<p>제24조 제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중앙주관기관에서 그 할당량을 차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배정 자격을 취소하고 1년 동안 배정 자격의 신청을 중단한다.</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22조 본 방법에서 정한 관련 문서 양식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 것이다.</p>	<p>제25조 본 방법에서 정한 관련 문서 양식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 것이다.</p>	<p>조항 번호만 변경되고 나머지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p>
<p>제23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p>	<p>제26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p> <p>본 방법은 중화민국 106년(2017년) 12월 8일에 개정된 조문으로 107(2018년)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1.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다.</p> <p>2. 이번은 전면 개정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므로, 법제 체계에 따라 제2항은 삭제하였다.</p>